

인천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3나7409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 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3나74096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3. 7. 11 선고 2023가소3158 판결

## 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B

변론종결 2024. 9. 11.

판결 선고 2024. 10. 16.

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. 7. 11. 선고 2023가소3158 판결

## 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3,575,469원과 그 중 3,309,97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 
값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 이 유

## 1.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

피고는 2023. 7. 11.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23. 9. 20.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, 이 사건  
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 
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, 피고는 2023. 9. 20.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때 비로소 제1심판결의  
선고와 그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,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 
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.

## 2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 
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현진

판사윤현정

판사김지향